

증정 출력용 바

# 대    법    원

## 제    1    부

### 판    결

사    건         2015다225851 구상금

원고, 피상고인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서울 중구 소월로 3 (남창동)

대표이사 김현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이광후, 김경남, 김현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위너스해운항공

서울 중구 퇴계로 235 (충무로4가)

대표이사 공면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성원, 이안의, 박해조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7. 선고 2014나54211 판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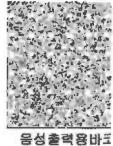
판결선고         2017. 1. 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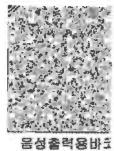
###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가. 물품운송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물품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운송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운송인은 운송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운송을 인수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확정된다.

한편,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운송관련 업무를 의뢰받았다고 하더라도 운송을 의뢰받은 것인지, 운송주선만을 의뢰받은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탐구하여 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우스 선하증권의 발행자 명의, 운임의 지급형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운송을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다4943 판결 참조).

나. 원심은, ① 비록 이 사건 하우스 선하증권이 발행인란에 날인이 되지 않은 사본이고 서렌더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 유가증권성은 부인된다고 하더라도, 삼원스틸 코엘티디(이하 '삼원스틸'이라고 한다)와 피고가 체결한 계약내용을 추단할 수 있는 문서로서의 증명력까지 부인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특별한 운송설비나 신용을 갖추지 못한 운송주선인이라고 하더라도 운송인으로 행위하거나 책임을 부담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법 제116조 제2항은 그러한 운송주선인이라도 개입권을 행사한 경우 운송인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만약 피고가 운송주선





온라인법률문서

인으로서의 책임만을 부담할 의사였다면 주식회사 한진해운(이하 '한진해운'이라고 한다)이 발행한 이 사건 마스터 선하증권을 삼원스틸에 그대로 교부하면 되는데도, 굳이 피고의 명의로 된 이 사건 하우스 선하증권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또한 이 사건 하우스 선하증권에 "as agent for carrier"라는 문구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기는 하나, 정작 피고는 이 사건 하우스 선하증권상의 계약운송인(carrier)이 누구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하지 못한 점, ④ 피고가 삼원스틸로부터 이 사건 화물 운송업무를 의뢰받은 운송구간은 부산항 컨테이너 야드에서 수하인인 대원인디아의 창고까지(CY/DR)인 반면, 한진해운이 인수한 운송구간은 부산항 컨테이너 야드에서 인도 첸나이항 컨테이너 야드까지(CY/CY)이므로, 만약 한진해운이 계약운송인이라면 인도 첸나이항부터 대원인디아의 창고까지는 계약운송인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되는데, 이는 송하인인 삼원스틸의 의사에 반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삼원스틸에 대하여 이 사건 화물에 관한 계약운송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법 제116조 제2항에서 정한 화물상환증에 관한 법리 및 운송인과 운송주선인의 구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운송인 지위 인정에 관한 이유가 모순되거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증명서

원심은,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이나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선적·운송·보관·양륙과 인도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데(상법 제795조 제1항), 운송인인 피고 또는 그 이행보조자에 해당하는 한진해운이나 롬 로지스틱스 인디아 프라이빗 리미티드가 이 사건 화물의 수령·선적·운송·보관·양륙과 인도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계약운송인인 피고는 이 사건 화물 중 일부에 관하여 발생한 녹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 이 양호한 화물 인도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이유가 모순된 다거나, 증명책임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판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이기택



대법관

김용덕

김용덕





음성 출력용 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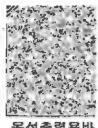
주 심 대법관

김 신 26

대법관

김소영 26/1/2016





문서 출력용 바

# 정본입니다.

2017. 1. 25.

대법원

법원사무관 박진영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